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서동호 소유물건(2025타경41705)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조인수

감정평가서번호: GL25041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엘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황순

黃 淳



감정평가액	이억일천만원정 (₩210,000,0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조인수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서동호 (2025타경41705)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4.11	2025.04.10 ~ 2025.04.11	2025.04.1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아파트	1세대 이	아파트	1세대 하 여	- 백	210,000,000
	합 계					₩21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소재 "군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평택군문2단지 주공아파트 제213동 제1층 제102호로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법원경매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3.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4월 11일을 기준하였음.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의 실지조사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25년 04월 10일부터 2025년 04월 11일까지 이며, 귀 제시 목록 및 관련공부 등을 기준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토지, 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인근 지역내 유사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 향별, 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대지권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대상물건은 비교가능성 있는 임대사례 등을 찾기가 힘들어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등을 통해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등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사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6. 기타 참고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호수,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관련공부에 의거하였음.

나.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인근 감정평가사례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하여 표준적인 상황을 기준하였는 바, 실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참여시 별도 확인을 요함.

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규정 및 거래 관행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분리하는 것이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제시한 집합건물 구분평가지 배분비율 등을 참작하여 토지, 건물 가격을 배분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의 개요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명칭	평택군문2단지 주공아파트 213동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360 [도로명 주소]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25번길61		
건물의 구조	피.씨조	사용승인일	1999.03.22

2. 대상 부동산의 현황

일련 번호	동	층	호	전유면적 (㎡)	공용면적 (㎡)	대지권 (㎡)	건축물대장 용도
1	213	1	102	59.96	17.0464	42.3	아파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출하였음.

2. 비교사례 선정

가.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	전유면적 (㎡)	거래시점	거래금액 (천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용승인일
							대지권 면적
①	평택시 군문동 360	평택군문 2단지 주공아파트 212동 7층/***호	59.96	2025.01.15	237,000	3,952,635	1999.03.22
							42.3㎡
②	평택시 군문동 360	평택군문 2단지 주공아파트 207동 14층/****호	59.96	2024.12.23	235,000	3,919,280	1999.03.22
							42.3㎡

나.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상기 사례 중 대상물건 인근에 소재하고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①>을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사정보정

거래사례<①>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 (1.000)

4. 시점수정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지역별 매매지수 - 아파트 "경기 서해안권 평택시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기간	변동률 (시점수정치)	비고
2025.01.15 ~2025.04.11	-1.369% (0.98631)	2025.01.15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12월) : 100.83 2025.04.14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2월) : 99.45 시점수정치 : $99.45/100.83 \approx 0.98631$

※거래시점(2025.01.15) : 2024년 12월 지수를 적용함.

※기준시점(2025.04.11) : 2025년 03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이므로 2025년 02월 지수를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요인구분	세부항목	비교치	비 고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본건은 사례 대비 대등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건물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본건은 사례 대비 대등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주차의 편리성		
개별적 요인	층별 효용	0.90	본건은 사례 대비 층별효용에서 열세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본건은 사례 대비 대등함.
개별요인 비교치계		0.9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 번호	사례단가 (원/m ²)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출단가 (원/m ²)	결정단가 (원/m ²)
1	3,952,635	1.000	0.98631	0.900	3,508,671	3,51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참고가격자료

1. 인근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PLUS]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기준시점	평가금액 (천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①	평택시 군문동 360	평택군문2단지 주공아파트 212동 6층/***호	59.96	2025.03.21	234,000	3,902,602	법원 경매
②	평택시 군문동 360	평택군문2단지 주공아파트 208동 13층/****호	59.96	2023.06.15	257,000	4,286,191	법원 경매

2.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구분	가 격 수 준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본건과 유사한 규모의 인근 아파트의 가격수준은 사용승인일, 층별, 위치별, 전유면적 등에 따라 3,300,000원/㎡~ 3,700,000원/㎡ 수준임.

3. 경매통계자료

[출처 : 부동산태인]

소재지	통계기간	물건구분	낙찰건수(건)	낙찰가율(%)
경기도 평택시	최근 1년	아파트	150	82.7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및 결정

1.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의 참고가격자료(유사부동산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에 의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2.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번호	전유면적 (㎡)	적용단가 (원/㎡)	산출가격 (원)	감정평가액 (원)
1	59.96	3,510,000	210,459,600	210,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소재 "군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피.씨조 경사지붕 15층 건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 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인접 도로상태등

외곽공도와 연계하여 단지내 도로로 진입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군문택지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군문초교), 절대보호구역(군문초교)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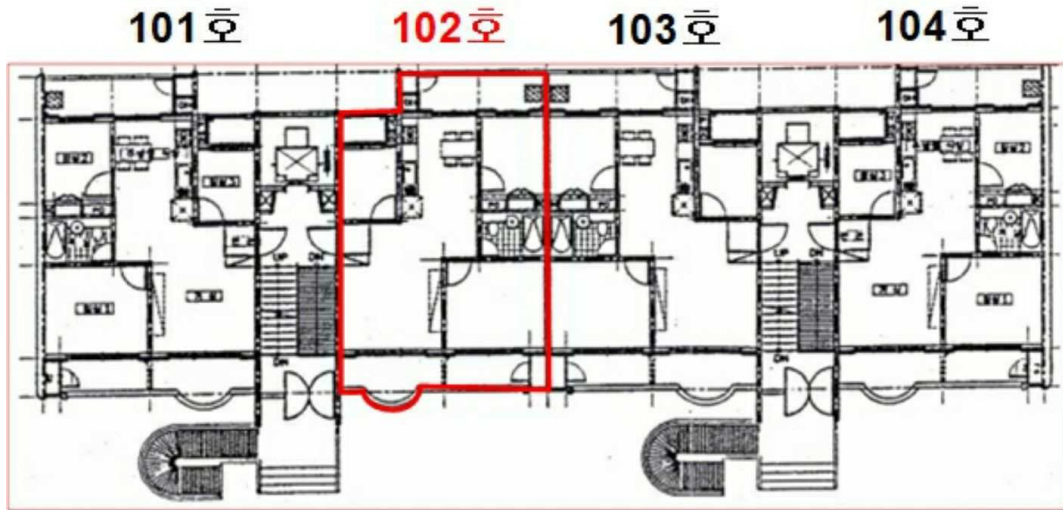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360 213동 1층 102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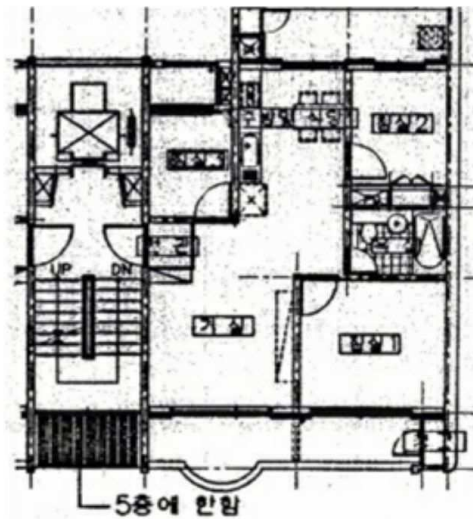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360 213동 1층 102호



[평택군문 2단지 주공아파트 제213동 1층 호별배치도]



[평택군문 2단지 주공아파트 제213동 제1층 제102호 내부구조도]

